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92
----------	-------

발의연월일 : 2026. 2. 24.

발 의 자 : 김정호 · 허종식 · 윤후덕
이연희 · 임미애 · 서왕진
박해철 · 김남희 · 박 정
허성무 · 안태준 · 이수진
전진숙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생전력이란 전동차량 등을 감속 또는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전력을 말함. 특히 철도차량의 경우 운행 특성상 빈번한 가·감속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회생전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적절한 설비와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철도 회생전력의 회수·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계량 및 정산 기준의 변화로 인해 철도 회생전력이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성과로 인정되거나 제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면서, 철도사업자가 회생전력을 적극 생산·활용하도록 하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차량 및 전기철도 설비의 운행 또는 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저장·활용하기 위한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 회생전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 에너지 이용 효율의 향상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설비 또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1. 철도차량 또는 전기철도 설비의 운행 또는 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다시 이용하기 위한 설비 또는 사업
2. 제1호의 에너지를 저장·변환·계통연계 또는 자체 소비하기 위한 설비 또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설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측정·계량·관리 및 효율 분석을 위한 설비 또는 시스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u> <u>을 함에 있어 에너지 이용 효</u> <u>율의 향상 효과가 크다고 인정</u> <u>되는 설비 또는 사업에 대하여</u> <u>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u> <u>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설비 또</u> <u>는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u> 1. <u>철도차량 또는 전기철도 설비</u> <u>의 운행 또는 제동 과정에서</u> <u>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하여</u> <u>다시 이용하기 위한 설비 또는</u> <u>사업</u> 2. <u>제1호의 에너지를 저장·변</u> <u>환·계통연계 또는 자체 소비</u> <u>하기 위한 설비 또는 사업</u> 3. <u>제1호 및 제2호의 설비에서</u> <u>발생하는 에너지의 측정·계</u> <u>량·관리 및 효율 분석을 위한</u> <u>설비 또는 시스템</u>